

100세신탁 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신탁된 금전을 하나의 신탁계약 내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 위탁자(생전수익자)의 이익을 늘리고, 고령·치매 등으로 위탁자의 의사능력이 문질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위탁자 사망 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가 지급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금액)

-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 위탁자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고, 이 신탁계약은 변경된 신탁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조 (신탁기간)

-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1항의 신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조 (생전 및 사후수익자)

-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생전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으로 정한다.
-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사후수익자는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에서 정하기로 하고, 위 사후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한다.
- 위탁자는 사후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은 사후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신탁재산의 운용)

- 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의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의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 주식에 운용할 경우 이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대리인의 지정)

- 위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에 따른 특별지급 개시 신청 시점부터는 제8조의 신탁재산 지급청구대리인인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한 모든 지시권을 행사하고, 그로부터 위탁자 및 제1항의 대리인에 의한 운용방법 지시권 행사는 제한된다.

제7조 (운용내역 통보 등)

- 수탁자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임을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 |
|------------|---|
| 운용내역 통보 방법 |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전자통신(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문) 위탁자: _____(인/서명) |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위탁자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신탁재산 지급청구대리인)

- 위탁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지급에 필요한 신탁재산 지급 관리를 위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 운용지시 및 지급청구를 대리하는 신탁재산 지급청구대리인(이하 "지급청구대리인"이라고 함)을 지정할 수 있다. 지급청구대리인은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에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에서 지정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으로 한다.
 - 위탁자의 배우자
 - 위탁자의 4촌 이내의 친족
 - 위탁자의 후견인
- 위탁자는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를 제출하여 지급청구대리인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특별지급)

- 위탁자는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를 제출하여 특별지급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개시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지급청구대리인이 수탁자가 사전에 인준한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지급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지급청구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급이 개시된 후, 지급청구대리인이 위탁자의 생활비 목적으로 신탁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위탁자가 미리 지정할 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의 증명 없이 위탁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급이 개시된 후, 지급청구대리인이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탁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서류 작성·발급기간(기관)에게 증명서류 기재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 위탁자에 대한 병원비 / 간병비 용도
 - 위탁자에 대한 요양시설 입주비 등 요양비 용도
 - 지급청구대리인은 수탁자가 사전에 인준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청구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를 제출하여 특별지급 종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위탁자의 의사능력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신감정서, 진단서, 소견서 등)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 지급청구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급이 개시된 때로부터 신탁재산 운용지시 및 지급청구에 한하여 위탁자를 대리하고, 그 때부터 위탁자의 신탁재산 운용지시 및 지급청구는 제한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특별지급이 종료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 운용지시 및 지급청구를 하고, 그 때부터 지급청구대리인의 신탁재산 운용지시 및 지급청구는 제한된다.

제10조 (위탁자 사망사실의 통보)

- 지급청구대리인은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청구대리인 이외에도 제3자가 위탁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지급청구대리인 또는 사후수익자에게 그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자 사망사실 통보의 지연 및 허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법적 절차)

-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위탁자는 신탁재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사용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원본과 이익의 보존)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을 보존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3조 (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4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표시한다.

제15조 (신탁보수)

- 신탁재산에 대한 계좌관리보수는 다음과 같다.

| |
|---|
| - 신탁원본 평균잔액 x 연 ()% x 신탁기간(일수) ÷ 365(윤년은 366일) |
| [신탁원본 평균잔액과 관련한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
| - 신탁재산 지급 또는 신탁계약 일부해지 시 수취함 |
| - 제9조의 특별지급이 시작된 때부터 신탁원본 평균잔액 x 연 ()% x 신탁기간(일수) ÷ 365(윤년은 366일) |
| 변경(특별지급 서비스 추가에 따른 관리보수 증액) |

-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지급 시 신탁집행보수는 다음과 같다.

| |
|-------------|
| 신탁잔액 x ()% |
|-------------|

- 제15조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자산 별 운용보수는 개별 운용자산별명세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신탁재산 중 미운용자산(고유계정대)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다.

| |
|--|
| - 고유계정대 평균잔액 x 연 ()% x 미운용기간(일수) ÷ 365(윤년은 366일) |
| [고유계정대 평균잔액과 관련한 일별 고유계정대 원본을 미운용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미운용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
| - 신탁재산의 지급 또는 신탁계약 일부해지 시 수취 |

- 수탁자는 신탁보수를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본 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이익의 계산 및 지급)

-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매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함)
 -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일 경과날
 - 신탁계약해지(일부해지 포함)로 인한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 그 밖의 날 ()
- 신탁이익의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부과금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된다.

제18조 (중도해지)

-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신탁재산은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연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5조에서 정한 신탁보수를 받고,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자산별 중도해지수수료는 개별 운용자산별명세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취 신탁보수를 일괄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 말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9조 (일부해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신탁계약의 종료 및 최종계산)

-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100세신탁 계약서

-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탁계약에서 정한 생존 및 사후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신탁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경우
-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의 계산승인 한 것으로 본다.
-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관리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자가 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 수탁자는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하고, 제1호 제2항에 따른 신탁집행보수를 사후수익자로부터 받는다.
-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된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관련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된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제21조 (청약의 철회)

-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청약철회의 기간 내에 예탁된 금전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철회한 행사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채와 등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3조에 따른 법정이자율을 금전 금액을 일천원위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2조 (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법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기준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 대비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위탁자(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 이혼이 조서에 갈다가 확인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땅히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2항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의 의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 한다.
- 제1항의 변경 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아야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위탁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탁계약서(이하 이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한문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 재판정함을 고려하여 위탁자의 계약체결 관련 의사능력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신감정서, 진단서, 소견서 등)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제25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 위탁자, 사후수익자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생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 (인감신고)

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적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다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법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 (관계법규 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라고 함을 준수한다.

제29조 (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과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한일법원)

이 신탁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 (관계법규 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2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 | | |
|-------------|---------|--------------|
| 위탁자 및 수익자 | 주 소: | _____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_____ |
| 성 명: | | _____ (인/서명) |
| 수탁자 | 주 소: | _____ |
| 성 명: | (주)하나은행 | 지점 |
| 부 (점) 장: | | _____ (인/서명) |

[별표1]

신탁자금 운용방법

다음의 신탁자금운용방법(내지 31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대출금 | 12. 자유증권기업어음(*1) | 23.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
| 2. 콜론 | 13. 표지어음 | 24. 유가증권의 옵션 |
| 3. 환매조건부채권 | 14. 중개어음 | 25. 수익증권 |
| 4. 국채 | 15. 발행어음 | 26. 장외파생상품 |
| 5. 통화안정증권 | 16. 양도성예금증서 | 27. ELS |
| 6. 기타 금융채 | 17. 신용카드채권 | 28. ETF |
| 7. 지방채 | 18. 개발신탁수익증권 | 29. ELB |
| 8. 사채 | 19. 공사채형수익증권 | 30. DLB |
| 9. 주식 | 20. 주식형수익증권 | 31. 그 밖의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2) |
| 10. 외화유가증권 | 21. 기타의 유가증권 | |
| 11. 보증어음 | 2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

(*1)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발생 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면 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귀사와의 100세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재산 운용방법 [별표1] (운용대상의 종류) | 세부내용 | |
|----------------------------|------|--|
| | 운용대상 | |
| | 위험도 | |
| | 운용비중 | |
| | 운용대상 | |
| | 위험도 | |
| | 운용비중 | |
| | 운용대상 | |
| | 위험도 | |
| | 운용비중 | |

